

■ 최신 법령 ■

[자원 · 에너지 · 환경&인프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해야 하는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조례 제8조 제5항 신설).
- 나.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와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내용(이하 “협의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조례 제20조 제8항 신설).

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조건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조례 제22조 제6항 개정).

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공사중지 명령의 불이행(제20조 제6항, 제21조 제2항)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례 제34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자(제4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사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제20조 제5항), 협의절차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제21조제1항),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례 제34조 제2항)

마.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조정을 조정하여,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조례 별표2 6호 라.~사. 삭제).

또한, 서울시는 2013년 7월 11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이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를 변경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3호, 2013년 9월 1일 시행).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m² 이상 대형신축건물과 사업면적 9만m²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변경 전 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고,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50% 이상(변경 전 25% 이상)을 LED조명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